



이슈 및 알림

‘자율안전확인 자동차용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자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2011.3.11일자로 자율안전확인대상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였으며, 본고는 동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과 이율러 자동차용타이어가 품질관련 법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요약한 것이다.

한편, 우리협회는 그간 국내타이어업계와 함께 기준치 이하의 저품질 타이어 유통 근절을 통한 타이어 사용자의 안전성 향상과 관련법규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금번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에 있어 적극 참여하여 왔다.

1.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금번 자동차용타이어 안전기준의 개정 취지는 한-EU FTA와 관련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자동차용 타이어의 안전요건을 ECE 기준에 부합화함으로써, 실효성이 미약한 시험 항목은 폐지하는 한

편 내구 및 고속성능 시험의 기준을 일부 상향하여 품질이 좋지 않은 자동차용타이어 사용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타이어 사용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 중 주요 사항은 현행 4가지 시험(타이어강도, 비드이탈, 일반내구성능, 고속내구성능) 중 안전시험으로서 변별력이 미약한 타이어강도와 비드이탈 시험을 폐지하는 한편, 일반내구성능과 고속내구성능 시험의 조건을 EU 시험 조건에 맞춤으로써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향후 동 개정안은 임안예고 기간 (2011.3.31까지)을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6월 즈음에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2. 자율안전확인제도

지난 2007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산품은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4 가지(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관리 체계로 개편되었다.

| | |
|-------------------------------|--------------------------------|
| 안전인증(의무) *제품검사+공정심사 | 사망사고가 발생할 정도의 위해성이 중대한 품목 |
| 자율안전확인(의무) | 신체에 안전위해의 우려가 있는 품목 |
| 안전·품질표시(의무) |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품목 |
| 어린이보호포장 | 위해제품 발견, 피해 확산 우려시 |

신생 자동차타이어는 ‘신체에 안전위해의 우려가 있는 품목’ 즉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부속서 18’)으로서, 자동차용타이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구조별[래디얼, 바이어스], 용도별[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트럭·버스용])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안전인증 기관은 신고인에게 필증번호가 기재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신고인은 동 신고필증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사는 출고전에, 수입자는 통관 전에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타이어 안전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 항목은 현행 타이어 일반내구성 및 고속내구성, 강도 그리고 비드이탈 시험 4가지인데, 상기 개정안이 반영되면 일반내구성 및 고속내구성 시험 2가지만 하게 된다. 한편, 자율안전확인 표시에 있어서는 국내 강제 인증 마크가 ‘KC’마크로 통합되면서 기존 ‘KPS’ 표시에서 ‘KC’마크를 표시하도록 개정(2009.6.30일)되었으며, 방법(스티커, 스템프, 각인 등), 색깔, 크기는 제품에 맞게 업체가 유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으나 마크의 비율은 기준을 준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유럽타이어고무협회, PAH 오일 규정 미준수 타이어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유럽타이어고무협회(ETRMA)는 자체조사를 통하여 방향족(PAH) 오일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유럽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타이어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EU와 EU 지역 내 국가 정부당국에 동 규제 미준수 타이어에 대한 조사 및 근절 활동을 강화, 확대하도록 촉구하였다.

유럽타이어고무협회(ETRMA)는 지난 2011.3.1일 제네바 모터쇼 이후 개최된 ETRMA 협의회에서 EU 전역에 판매된 타이어를 대상으로 PAH 오일 사용에 대한 자체 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ETRMA는 수개월간 EU 시장에 판매, 유통되고 있는 45개 브랜드 110개의 타이어 샘플을 조사하여 2011.2.18일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동 조사는 EU지역 및 해외 주요 타이어 생산국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타이어 품목(승용차용, 소형트럭용, 오토바이용, 산업용 타이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조사된 45개 브랜드 중 9개 브랜드의 12개 타이어가 PAH 오일 사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사대상 타이어 중 11%가 PAH 오일 사용 허용치를 초과하여 규정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국 측면에서 조사 대상타이어는 총 16개국(EU 9개국과 비EU 7개국)의 총 92개 생산공장에서의 제품이었으며, 이 중 관련규정 미 준수 타이어들 12개 모두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었다.

한편, EU는 PAHs(고리형 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가 EU 과학위원회(CSTEE)에서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발견되고 PAHs의 환경 속에서 재생산시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및 독성을 가진 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환경 속에서 이의 방사물이 가능한 저감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2010년 1월 1일부터 타이어와 타이어부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시판되는 방향족계 오일의 사용 함량에 기준치를 두어 규제(1907/2006/EC[REACH], 부속서 17)하고 있으며, 규제치는 PAHs 총량 규제로 10mg/kg 미만, Bap 개별 규제로 1mg/kg 미만이다.

〈규제대상 PAHs 종류〉

| 화학명 | 약명 | 화학물질 CAS 번호 | 화학명 | 약명 | 화학물질 CAS 번호 |
|--------------------|-----|-------------|------------------------|-------|-------------|
| Benzo[a]pyrene | BaP | 50-32-8 | Benzo[b]fluoranthene | BbFA | 205-99-2 |
| Benzo[e]pyrene | BeP | 192-97-2 | Benzo[f]fluoranthene | BjFA | 205-82-3 |
| Benzo[a]anthracene | BaA | 56-55-3 | Benzo[k]fluoranthene | BkFA | 207-08-9 |
| Chrysen | CHR | 218-01-9 | Dibenzo[a,h]anthracene | DBAhA | 53-70-3 |

ETRMA 측은 매년 EU 지역으로 약 1억개의 타이어가 수입, 유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PAH 오일 사용 규정 미준수 11%의 비율은 상당한 규모로 우려를 표명하였다. EU와 전 세계 지역 대부분의 타이어

제조사들은 EU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하에 PAH 오일 사용 제한치를 준수하고 있고, ETRMA 회원사들의 경우 이로 인하여 1억 유로 이상의 엄청난 비용이 초래된 상황에서, PAH 오일 규정을 비준 수하는 불법 타이어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은 REACH 제도를 비롯한 향후 타이어 안전 향상 관련 규정(타이어 라벨링 제도 등) 시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따라 EU와 EU 지역 내 국가 정부당국에 동 규제 미준수 타이어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조치를 촉구하였다.

〈자료원 : 유럽타이어고무협회 홈페이지, 미국 'Rubber & Plastics News' (2011.3.7),
관련 EC Directives 내용 종합〉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국내에서도 EU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와 같은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2.25일 입법예고하였으며, 본고는 동 예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참고로, '타이어'의 경우 현재 EU REACH 제도하에서는 등록 및 신고에 있어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환경부는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법률(안)을 2011.2.25일 입법예고 하였다.

1. 취지

우리나라는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에 한정된 등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유해법 제정 전부터 사용되어온 화학물질(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부족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EU·일본 등은 이미 산업계에 위해성정보 등을 생산·제출도록 하였으나, 국내에는 위해성 여부에 대한 제한 없이 화학물질이 수입·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은 물론, 무역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여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 신규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
- ▶ 기존화학물질 : 1991.2.2 이전 국내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부 장관과 협의하여 1996.12.23에 고시한 물질 및 1991.2.2 이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평가가 완료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질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수입 증가율이 수출보다 훨씬 큰 상황(2002년 대비 2006년 화학물질 수입량 증가율은 55%, 수출량 증가율은 13%)이어서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EU의 REACH 시행(2008.6.1) 이후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자국 화학물질제도를 강화하는 대외 현실을 고려할 때, 화평법 제정을 통한 화학물질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 있다.

▶ REACH :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

2. 주요 내용

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그간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하던 내용을 기존화학물질까지 확대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연간 수입·제조량 100kg 이상인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500kg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기존화학물질(약 37,000종) 중 국가가 용도, 유통량 등을 사전평가하여 위해정도에 따라 평가가 필요한 화학물질만을 평가대상물질로 선정하고, 이들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평가대상물질의 경우 등록신청 시 사전에 예비등록 신청을 하고 예비등록을 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최대 8년의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산업계의 이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두고자 하였다. 특히, 발암물질 등 위해가 높은 고위해물질의 유통을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사용용도에 따라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화학물질 제조·판매자 등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자는 반드시 양수인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 용도에 따른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전달토록 하였다.

3. 예상 효과 및 추진 계획

환경부는 이번 법률안이 시행되면, 기존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해정보를 확보하여 화학물질 노출 및 위해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예방적인 화학물질 관리 및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로 인하여 산업계의 친환경적 대체물질 개발, 유해물질 사용저감 등을 유도하여, 산업 활동의 친환경성을 점차 강조하는 글로벌 스텐더드에 대한 산업계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법률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생산 수요가 증가하면, 화학물질 정보 생산을 담당하는 국내 시험전문기관(GLP)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관련 전문기술을 동남아 시험분석시장에 수출하는 등 새로운 시장개척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GLP(Global Laboratory Practice) : OECD가 규정하는 우수실험실 기준을 충족하는 화학물질 시험기관

환경부는 이와 같이 법 시행이 국민건강증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도 이행에 따른 과중한 부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위해우려 수준에 따른 충분한 등록준비기간(2~8년)을 부여하고, 기업간의 공동등록을 제도화하여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유도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화학물질 정보생산기법 및 대체물질 개발 등 기업들의 제도 이행지원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등록서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IT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동 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1.2.25~4.26(60일간)이며, 구체적인 법률 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